

「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2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(2017년 6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장동기)

가. 제안이유

-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,147,832천원으로서, 이중 10건에 852,643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〈201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〉

(단위 : 천원)

연번	예비비지출 사유	지출결정액	비고
계	10건	852,643	
1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복구	18,810	
2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계방산정보화마을센터 피해복구	4,700	
3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복구	37,000	
4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	133,875	
5	봉평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유실에 따른 긴급복구	200,000	
6	평창운수(주)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임차	22,800	
7	평창운수(주)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임차	150,000	
8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교통시설 복구	39,000	
9	AI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방역	7,000	
10	5.2~5.5 강풍피해에 따른 농업재해지원금	239,458	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,147,832천원이며,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852,643천원이 지출결정되었고, 그 중 721,810천원이 지출되고 118천원이 이월되었으며, 130,71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음.
- 이와 같이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

2016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,

예비비 지출은

5.2~5.5일 강풍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비와 재난지원금,

농어촌도로 201호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비,

평창운수(주) 노조과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,

AI차단 긴급방역 등의 내용으로 지출되어

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

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.

따라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

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